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

####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730

2024. 11. 25.(월) 정책복지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**발 의 자** : 박지헌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1월 19일

-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#### 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#### 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박지헌 의원)

#### 가. 제안사유

○ 충청북도 내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안전·건강 및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 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통합 촉 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O '아동생활시설' 및 '보호아동 등'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O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)
- 보호아동 등에 대한 문화활동비 지급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)

##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# 가. 제출배경

-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아동생활시설 문화활동비(용돈) 지원을 위한 간담회('24. 8. 13.)에서 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문화활동비 및 건강, 학습, 문화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.
  - ※간담회 참석자: 시도의원, 아동양육시설·공동생활가정·자립지원시설 기관장 등 20여 명
- 특히 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문화활동비(용돈)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'2024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'를 통해 지자체 및 해당 시설에 지원을 권고했으며,
- 현재 충북, 울산, 강원, 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이미 시도 예산으로 문화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음.
- 이에 충청북도 내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 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통 합 촉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함.

#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'아동생활시설'과 '보호아동 등'의 용어를 정의함.
  - '아동생활시설'은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

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보호대상 아동이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으로 정의함.

- '보호아동 등'은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(이하 '아동생활시설'이라 함)에서 보호 중인 사람으로 정의함.
- 본 조례안에서 '보호아동 등'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.
- '아동'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1)에서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민 다수가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인지하고 있음.
- 또한 아동생활시설 보호대상아동은 과거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18세에 달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했던 것이 법 개정('21.12.21.)에 따라 현행 법상 아동이 아닌 청소년 및 청년의 연령대인 25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.

※청소년: 9~24세(청소년기본법) / 청년: 19~34세(청년기본법)

#### <아동복지법 개정>

# 이전 법 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 지 등) ① 제15조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, 보호 목 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 ・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 소시켜야 한다

#### 현행 법 [시행 2021.12.21.]

- 제16조의3(보호기간의 연장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.
  - 1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(대학원 은 제외한다)에 재학 중인 경우
  - 2.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·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
  - 3.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·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<sup>1) 「</sup>아동복지법」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.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- 물론 입법 규정 상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타 법령 및 조례와 다르게 정의할수 있음. (이 경우 용어 정의의 적용 범위는 해당 조례로 제한됨) 그러나 '아동'이란 용어가 갖고 있는 인지적 보편성으로 인해 조문 이해 시 다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, '보호아동'에 의존명사인 '등'을 넣어 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판단됨.
- 안 제5조는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
- 단 지원계획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「아동복지법」 제8조<sup>2)</sup>에 따라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 음.
- 안 제6조는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- 안 제7조는 보호아동 중 초등학생 이상 및 그 연령대 해당자에게 용돈 개념의 문화활동비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음.
- 현재 시설 보호아동 등의 문화활동비(용돈) 지급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급 금액 및 방식 등의 기준이 될만한 가이드라인도 없음.
- 이에 충북도 내 33개 시설(아동양육시설 10개소, 공동생활가정 23개소)마다 지급 금액도 다르고 일부 연령대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 시설도 있음.
- 따라서 충북도 차원의 문화활동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충북도 내 시설 보호아동 등에 대한 문화활동비 지급액 및 방식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- O 단, 도에서는 안 제7조제4항에 따른 문화활동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시,

<sup>2) 「</sup>아동복지법」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문화활동비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시설 보호아동 등이 올바른 소비 습관 및 경제관 확립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·감독해야 할 것임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한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- O 또한 도 담당부서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
- O 다만, 보조금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탄력적 예산 운용을 위해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수정가결"

#### 7. 수 정 안 요 지

#### 가. 수정이유

○ 보조금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탄력적 예산 운용을 위해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권고 및 지원에 대해 권한 부여 형 식을 취하고 있는 근거 법령에 따라 기존 의무부과 형식을 권한 부여 형식으 로 수정하고자 함.

### 나. 수정 주요내용

- 문화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항 중 "~지급한다"는 의무부과 형식을 "~지급할 수 있다"는 권한 부여 형식으로 수정함. (안 제7조)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 - 「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 및 수 정안 조문대비표
  - O 「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(수정안 포함)」

####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제730호 발의연월일: 2024년 11월 19일

발 의 자: 이동우 의원

#### 가. 수정이유

○ 보조금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탄력적 예산 운용을 위해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권고 및 지원에 대해 권한 부여 형 식을 취하고 있는 근거 법령에 따라 기존 의무부과 형식을 권한 부여 형식으 로 수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수정 주요내용

○ 문화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항 중 "~지급한다"는 의무부과 형식을 "~지급할 수 있다"는 권한 부여 형식으로 수정함. (안 제7조)

####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지급한다"를 "지급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급한다"를 "지급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지급한다"를 "지급할 수 있다"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				
제7조(문화활동비 지급) ① 도지사	제7조(문화활동비 지급) ① 도지사				
는 보호아동 등 중 다음 각 호의	는 보호아동 등 중 다음 각 호의	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				
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활동비를	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활동비를				
<u>지급한다.</u>	지급할 수 있다.	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원안과 같음)				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은 제	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은 제				
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생	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생				
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동일한 문	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동일한 문				
화활동비를 <u>지급한다.</u>	화활동비를 <u>지급할 수 있다.</u>				
③ 문화활동비는 보호아동 등의	③ 문화활동비는 보호아동 등의				
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	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				
지급한다.	지급할 수 있다.				
④ (생 략)	④ (원안과 같음) .				

####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(수정안 포함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 통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아동생활시설"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0조에 따라 충청 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설치된 시설 중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공동 생활가정을 말한다.
  - 2. "보호아동 등" 이란 제1호에 따른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보호아동 등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아동 등의 안전·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아동생활시설의 보호아동 등의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지원계획은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원 사업)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의 안전·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신체적 · 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
  - 2. 문화활동 지원 사업
  - 3. 학습동기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사업

- 4. 멘토링 등 관계형성 및 상담 지원 사업
- 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-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문화활동비 지급)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1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
  - 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
  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령대이면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
  -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생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동일한 문화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③ 문화활동비는 보호아동 등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.
  - ④ 그 밖에 문화활동비의 지원 내용,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- 제8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관계법령

#### □ 아동복지법

- 제50조(아동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  -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

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1. **아동양육시설:**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, 양육 및 취업훈련,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2. 아동일시보호시설: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3. **아동보호치료시설:**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
  - 가.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,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  - 나. 정서적·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·치료하는 시설
- 4. 공동생활가정: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, 양육,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5. 자립지워시설: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

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제59조(비용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3. 27., 2017. 10. 24., 2020. 12. 29.>

- 1.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
- 2.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
- 3. 아동복지사업의 지도, 감독,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
- 4. 삭제 <2016. 3. 22.>
- 4의2.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
- 4의3.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
- 5.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
- 6.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
- 7.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
- 8.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 육성에 필요한 비용

#### □ 초・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<개정 2019. 12. 3.>

- 1. 초등학교
- 2. 중학교 · 고등공민학교
- 3. 고등학교 · 고등기술학교
- 4. 특수학교
- 5. 각종학교

#### □ 고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- 1. 대학
- 2. 산업대학
- 3. 교육대학

- 4. 전문대학
- 5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"원격대학"이라 한다)
- 6. 기술대학
- 7. 각종학교
- 제9조(대학원) ① 대학(산업대학·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. 다만,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  -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.
  -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,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비용추계서

#### 1. 사업개요

O 시설아동(양육시설, 그룹홈)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

#### 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시설아동(양육시설, 그룹홈) 문화활동비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

#### 3. 관련조문

O 안 제7조(문화활동비 지급)

#### 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- 도내 시설아동(양육시설, 그룹홈)의 학령별 문화활동 지원
- 나. 추계 결과
- O 문화활동비 지원: 451명, 339,600천원 (도비 40, 시군비 60)
  - 초등학생 30천원 × 149명 × 12개월=53,640천원
  - 중 학 생 50천원 × 149명 × 12개월 = 89,400천원
  - 고등학생 80천원 × 84명 × 12개월 = 80,640천원
  - 대 학 생 140천원 × 69명 × 12개월 = 115,920천원
-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(40%) 및 시군(60%) 매칭 지원

##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	보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	입	_	-	_	_	_	_
세	之言	339,600	339,600	339,600	339,600	339,600	1,698,000
생활	·지시설 ·아동 F비 지원	339,600	339,600	339,600	339,600	339,600	1,698,000
재원	조달	339,600	339,600	339,600	339,600	339,600	1,698,000
도 비	(40%)	135,840	135,840	135,840	135,840	135,840	679,200
시・군기	时(60%)	203,760	203,760	203,760	203,760	203,760	1,,018,800